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## □ 변경 사유

- (1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  -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투자 예외 조항 추가
- (2)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
- (3) 반기(2015. 3. 6. 기준)으로 재무 정보 및 운용실적 갱신
- 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7. 31.

## 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	사항	
5. 운용전문인력	2014.09.30	2015.06.30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투자 가능한	
상	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가. 투자 대상	<u>매수 추가</u>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	(4)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
상		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
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	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	개정사항 반영	오
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	
2) 동일종목투자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	개인 15.4%( <u>주민세</u> 포함), 일반법	<u>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
관한 사항	인 14%	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
나. 과세	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	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
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	15.4% (소득세 14%, <u>지방소득세</u>
	15.4% (소득세 14%, <u>주민세</u>	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
	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	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
	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	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
	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	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
	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	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
	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	에 원년 8 기
	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	배당소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
	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	
		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



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 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 득, 과세소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 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 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, 주민세 다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 이익은 15.4%의 세율로 원천징수 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 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 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 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 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 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 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 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 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 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. 로 공제 받게 됩니다.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반기 기준으로 갱신 1. 재무정보 2015. 3. 6 기준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반기 기준으로 갱신 2015. 3. 6 기준 혀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반기 기준으로 갱신 2015. 3. 6 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 사항 경 (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법 개정사항 반영 가. 수익자총회 등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한 경우만 해당한다)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 관한 사항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가. 정기보고서 회계감사관련 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내용 기재 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 류 제출 등 <u>니다. 다만, 수익자의</u>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



<u>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</u>
<u>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
<u>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</u>
<u>니다.</u>
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
<u>억원 이하인 경우</u>
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
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
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
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
<u>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</u>
<u>오</u>